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081

발의연월일: 2023. 8. 30.

발 의 자:김교흥·정일영·오영환

허 영・임호선・이성만

이동주 · 강준현 · 조응천

안규백 • 조정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음.

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법리해석에 따라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.

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토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교육시설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전세버스 업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.

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

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(안 제2조제23호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등에"를 "등(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)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22. (생 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23. "어린이통학버스"란 다음	23
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	
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	
이하 같다)를 교육 대상으로	
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	
학 <u>등에</u> 이용되는 자동차와	<u>등(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</u>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	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
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	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)에-
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	
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	
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	
자동차를 말한다.	
가. ~ 차. (생 략)	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
24. ~ 33. (생 략)	24. ~ 33. (현행과 같음)